

내부감사 규정

제정 2021.12.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내부감사는 내부경영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체육회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경리 및 업무활동의 조사를 하여 업무수행의 비능률성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경영능률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합리화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감사는 체육회의 모든 조직단위와 이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내부감사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내부감사로 구분한다.

제4조(감사원칙) ① 감사는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예방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사는 제도개선과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은 현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계획

제6조(감사계획) 감사계획이란 감사에 관한 방침과 범위, 일정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감사계획서의 내용) 감사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구분
2. 피감사부서명
3. 감사의 목적

4. 감사의 성명 및 업무분담사항
5. 감사일정

제9조(감사실시의 통보) 감사는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나, 감사의 원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위원

제10조(감사위원의 구성) ① 감사위원은 회장이 감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 ② 감사통할 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 감사위원은 사무처장이 임명하되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④ 본회 직원이 아닌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에 임명된 자에게는 감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위원의 지위) ① 감사위원은 감사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지며 업무집행 및 감사보고에 따른 책임을 회장에 대하여서만 부담한다.

- ② 감사위원은 법령, 내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제12조(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객관적인 자세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인 감사기준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피감사부서의 과실, 오류 및 부정을 묵과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에 관한 일체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피감사부서의 업무활동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위원의 권한) 감사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위원 위촉기간동안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감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및 확인서 작성요구
3. 필요시 거래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자료의 징구요구
4.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건의 및 보고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

제14조(피감사부서의 의무)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의무) 피감사부서와 관련있는 부서는 감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불응시의 조치) 감사위원은 피감사부서 및 관련부서가 감사위원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감사보고

제17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위원은 감사종료 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필요조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긴급보고) 감사위원은 감사기간중이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기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사무처장은 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는 즉시 피감사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결과보고) ① 피감사부서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조치계획 및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받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의 실행여부 및 조치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감사보고서의 보관) 감사보고서와 이에 부속된 서류 또는 자료는 대외비로써 5년간 사무처장이 취급·보관하며,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는 복사 및 열람을 할 수 없다.

제 7 장 적극행정 면책

제2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결과 사무처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3조(면책의 기준) ① 제22조에 따른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면책대상 제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회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경상북도체육회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면책심사 신청) ①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 중 또는 감사가 끝난 후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 “별표 제1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 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7조(면책심사 처리) 제26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소관부서는 “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회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심사 결과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심사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 결과처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임직원 등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표 제4호”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01.0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일 일 수 감 보 고 서

○ 단체명 :

20 . . .

제 목	수 감 내 용	지 적 사 항	감사자

[별표 제1호]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청내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 및 임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 명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

[별표 제2호]

면책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 사 연 월 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 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심사개요	일 시		장 소	
	안 건			
	양 정 (안)			
심사결과				

20 . . .

○○○면책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간사	(서명 또는 인)

